
2016년도 공익채널 선정 신청요령

2015. 9.



방송통신위원회

목 차

I. 선정계획	3
1. 선정사항	3
2. 선정신청 자격	3
3. 선정신청서 접수	3
4. 선정조건 및 선정서 교부	3
5. 추진일정	4
6. 유의사항	4
7. 기타	4
II. 선정심사	5
1. 심사 개요	5
가. 선정의 기본방침	5
나. 심사 절차	6
다. 심사 기준	7
라. 공익채널 전문편성 세부영역 평가방법	7
III. 선정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요령	11
1. 신청서류 구성 및 제출부수	11
2. 작성요령 및 양식	11
IV. 선정신청서류 작성 세부지침	13

I. 선정계획

1 선정사항

- 방송법 제70조제8항에 따른 공익채널
- 선정채널수 : 총점의 65% 이상 및 심사사항별 40% 이상 획득한 채널 중 고시된 방송분야별로 고득점 순으로 3개 이내

2 선정신청 자격

- 방송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

3 선정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15.9.24(목) 09:00 ~ '15.9.30(수) 18:00까지(토요일·일요일·공휴일 제외)
(선정신청서를 접수한 사업자에 한해 내용보정을 10. 8.(목)까지 허용)
- 접 수 처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방송지원정책과(5층, 520호)

4 선정조건 및 선정서 교부

- 방송통신위원회는 선정 심사결과를 토대로 공익채널 운영계획서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선정조건으로 부과할 수 있음
- 선정조건을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각서 등의 필요서류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선정서를 교부함

5 추진일정

- 공익채널사업자 선정 : 2015년 11월 중(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6 유의사항

- '공익채널 선정 신청요령'에 따라 제출된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및 국민과의 공적 약속이므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함을 주지하고 선정 후 정기적으로 이행실적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실현가능성 있는 계획을 기술해야 함

7 기타

- 심사과정에서 제출서류 외 보충서류 등 추가 자료를 제출토록 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는 백서 등을 통해 공개될 수 있음
- 선정신청서의 작성·제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선정심사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선정심사에 소요되는 외부전문기관 용역비 등 실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음
- 기타 상세한 내용 문의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방송지원정책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전화 : 02)2110-1431,1434)

Ⅱ. 선정 심사

1 심사 개요

가. 신청 방송분야

- 방통위가 고시한 「공익성 방송분야」에 따른 사회복지, 과학·문화 진흥, 교육지원 3개 중 하나의 방송분야를 신청
 - 신청인은 '공익채널 전문편성 세부영역'에 명시된 전문편성 세부영역 및 세부내용 등을 감안하여 신청 방송분야 및 전문편성 세부영역 결정
- ※ 전문편성 세부영역은 1개 신청을 원칙으로 하나 동일 방송분야 내 복수 신청도 가능

< 공익성 방송분야 고시(방통위고시 제2012-44호) >

방송분야	전문편성 내용
사 회 복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 기본권과 사회적 이익실현에 불리한 사회적 소수를 대변하고 관련 정보제공 목적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되게 편성하는 방송분야 ○ 저출산·고령화 등 복지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여 복지사회 구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주되게 편성하는 방송분야
과 학· 문 화 진 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에 대한 이해와 진흥을 도모하고 한국문화에 대한 홍보와 이해를 제고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주되게 편성하는 방송분야 ○ 과학·기술 분야의 이해 및 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방송프로그램을 주되게 편성하는 방송분야
교 육 지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청소년의 공교육 보완을 통해 사교육비 절감, 지역·계층간 교육기회 격차해소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주되게 편성하는 방송분야 ○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방송의 사회교육 기능을 신장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주되게 편성하는 방송분야

※ 위 공익성 방송분야에 해당하는 전문편성 내용 중 방송법 제70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채널, 장애인 복지채널의 전문편성 관련 사항은 제외

< 공익채널 전문편성 세부영역 >

방송분야	전문편성 세부영역	전문편성 세부내용
사회복지	사회적 소수자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약자계층(저소득층, 구직자, 다문화 가정 등)의 이해와 이익 증진, 새로운 사회 계층(탈북자, 결혼이주자, 해외이주노동자 등)의 문화의 소개와 이해 증진 등과 관련된 정보 및 방송프로그램 ▪ 다인종·다민족·다문화 시대 진입에 따른 사회 통합과 문화 다양성 증진을 위한 새로운 사회편입 계층의 적응, 복지 개선을 위해 필요한 교육/언어/경제 활동 등을 다루는 정보 및 방송프로그램
	출산·육아· 아동·청소년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결혼·임산·출산·육아 등과 관련된 정보 및 방송프로그램 ▪ 아동·청소년 복지와 관련된 정보 및 방송프로그램
	노인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고령화 사회 진입과 현실화에 대비한 노후 대책, 노인 복지와 관련된 정보 및 방송프로그램 ▪ 노인층의 신체·정신 건강 증진, 질병 예방과 진단, 재활 등과 관련된 정보 및 방송프로그램 ▪ 노인 등 1인 가구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보 및 방송프로그램 ▪ 가족 구조 변화에 따른 필요한 복지, 소외 극복, 자녀·가족 관계유지·개선 등과 관련된 정보 및 방송프로그램
	보건·의료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 건강과 행복 증진, 삶의 질 향상,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위해 도움이 되는 보건·의료 서비스와 정책,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정보 및 방송프로그램
	경제·소비자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복지 실현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된 정보나 방송프로그램 ▪ 사회 진출자와 재취업자를 위한 구인·구직, 직업 능력의 개발과 적성·자격의 증진, 산업인력의 양성 등과 관련된 정보나 방송프로그램 ▪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과 증진, 국내 이주민, 외국인 노동자 또는 해외취업 노동자의 취업과 고용, 중소기업 또는 자영업 분야에서의 창업 등과 관련된 정보 또는 방송프로그램 ▪ 소비자보호 등과 관련된 정보 또는 방송프로그램
	법률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에 대한 이해 증진,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방송분야	전문편성 세부영역	전문편성 세부내용
		<p>있는 사회적 소수자 계층에 대한 법률 지원·상담·구조, 법문화 교육, 법질서·준법의식의 선진화 등의 정보 및 방송프로그램 제공, 노무관련 법률 정보 및 방송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 교통, 환경, 민원 등과 관련된 법률 정보 및 방송프로그램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된 전문편성 세부영역 외에 사회·문화 등 환경적 변화에 따라 복지사회 구현 및 사회통합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회복지 분야 방송프로그램 <p>※ 신청사업자는 신청한 전문편성 세부영역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을 공익채널선정신청서에 충분히 기술하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해 심사시 '사회복지 방송분야'의 적합성을 판단</p>
과학·문화 진흥	예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의 다양성 증진, 예술의 대중화 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 ▪ 새로운 예술분야 소개 및 예술인 발굴, 예술에 대한 직·간접적 참여 등을 제공하는 방송프로그램
	문화 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적 한국문화 또는 새로운 한류 문화를 다른 국가/문화에 소개 및 이해 도모, 세계 속의 한국 홍보, 타문화/세계문화의 국내 소개를 통해 문화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 및 다원성을 증진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 ▪ 지역 문화와 지역의 축제·문화 행사 등과 관련된 정보와 방송프로그램
	과학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과학 기술에 대한 이해와 발전, 생활 근접형 과학 기술을 소개하는 방송프로그램 ▪ 과학·기술의 발전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 분야의 이해와 발전 증진, 실시간 기상 정보, 재난 및 재해 예방, 에너지, 친환경 녹색성장, Green IT 등 환경 분야 등에 대한 정보 및 프로그램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된 전문편성 세부영역 외에 사회·문화 등 환경적 변화에 따라 과학·문화 진흥에 필요한 방송프로그램 <p>※ 신청사업자는 신청한 전문편성 세부영역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을 공익채널선정신청서에 충분히 기술하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해 심사시</p>

방송분야	전문편성 세부영역	전문편성 세부내용
		'과학·문화진흥 방송분야'의 적합성을 판단
교육지원	공교육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수업과 연계된 수준별 교과 프로그램 제공, 질 높은 수능 대비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사교육 문제의 완화, 지역·계층 간 교육 기회의 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정보 및 교과 방송프로그램 ▪ 초중등 과정의 인성 강화 교육 프로그램 제공,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영재교육, 체험 교육 및 창의력 증진 프로그램
	평생·직업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어(제2·제3 외국어), 노인대학, 성인 문해 교육 등 생애단계별 맞춤형 평생학습과 관련된 정보 및 방송프로그램 ▪ 직업·적성 탐색, 창업·직업 훈련 등과 관련된 정보 및 방송프로그램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된 전문편성 세부영역 외에 사회·문화 등 환경적 변화에 따라 교육 지원이 요구되는 방송 프로그램 <p>※ 신청사업자는 신청한 전문편성 세부영역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을 공익채널선정신청서에 충분히 기술하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해 심사시 '교육 지원 방송분야'의 적합성을 판단</p>

나. 심사 절차

1) 심사준비과정(방송지원정책과)

- 서류접수 : 제출서류 구비여부 확인 및 미비서류 보정
- 현장실사(필요시) : 기술, 시설관련 내용 등 서류검토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사항

2) 심사 과정

○ 심사위원회 구성

- 각 분야별 해당 전문가로 구성

○ 심사위원회 운영

- 공익채널 운영계획 청취(필요시)

- 청취대상 : 신청법인 대표자, 편성책임자(필요시 최대주주 포함)
- 청취내용 : 공익채널 운영의지, 운영계획의 실현가능성 등 공익채널 운영계획서 세부내용

- 심사평가

- 공익채널 운영계획 의견청취 결과와 공익채널 운영계획서 내용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심사평가
- 심사위원장을 제외한 심사위원들이 전 항목에 대하여 심사평가 실시

다. 심사 기준

심사사항	심사항목	배 점	비 고
신청 방송분야에의 적합성	공익채널 선정의 필요성	50	비계량
	과거 채널 운영실적	250	비계량
	관련 법령 준수*	감점	계 량
	〈 소 계 〉	300	
공정성·공익성 및 실현가능성	공익적 활동 실적 및 계획	50	비계량
	〈 소 계 〉	50	
운영계획의 적정성	전문편성 프로그램 제작 계획	150	비계량
	방송 프로그램 수급 계획	100	비계량
	본방 프로그램 편성 비율	50	계 량
	〈 소 계 〉	300	
공적 책임의식 및 사업수행능력	재정적 능력	150	비계량
	방송프로그램 제작 인력 현황 및 확충계획	50	비계량
	방송시설·장비 현황 및 확충계획	50	비계량
	〈 소 계 〉	250	
시청자불만 및 민원처리 현황	시청자 민원처리 방법의 제도화	50	비계량
	시청자 민원처리 실적	50	비계량
	〈 소 계 〉	100	
〈 합 계 〉		1000	

* 최근 3년 간('12.9.1~15.8.31) 방송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례가 있는 경우 감점(세부 감점기준은 심사위원회가 정함)

Ⅲ. 선정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요령

1 신청서류 구성 및 제출부수

- 선정신청서류는 신청공문, “공익채널 선정 신청서”라는 제목으로 본문, 부속서류로 구성하여 각각 작성
 - 본문은 공익채널 선정신청서, 서약서, 공익채널 운영계획서 등으로 작성
 - 부속서류는 본문의 근거가 되는 각종 증빙자료를 취합·작성
- 상기 공익채널 신청서는 신청기한(15.9.30) 내에 원본 1부 및 사본 12부와 본문의 내용을 수록한 CD(혹은 USB) 1개를 제출하여야 함
 - 단, 보정이 필요한 경우 보정된 원본 1부 및 사본 12부와 본문의 내용을 수록한 CD(또는 USB) 1개를 '15.10.8(목)까지 제출

2 작성요령 및 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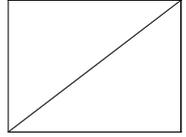
-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기술하되, 심사항목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체계와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작성
- 선정 신청서류는 신청인이 직접 작성. 다만, 기술·회계 등 외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특정 부분의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문기관을 밝혀야 함
- 도량형은 미터법으로 표기하고, 화폐단위는 원화로 표기

- 제출서류는 한글문서(hwp)로 작성하고, 기본글꼴 및 크기는 “휴먼 명조, 13”, 표는 “중고딕, 12로 작성, A4용지(210×297mm)를 사용하며, 쪽수를 일렬번호로 작성
- 공익채널 운영계획서는 양면인쇄를 원칙으로 하며, 지도·도면 등 불가피하게 A4 규격보다 큰 규격의 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같은 크기로 접어서 제출
- 공익채널 운영계획서 원본 및 사본은 표지에 각각 “원본” 또는 “사본”임을 표시하고, 표지 다음 쪽에 각각 “원본임에 틀림없음” 또는 “원본과 동일함”과 신청법인과 대표자명을 기재한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함
 - 사본의 경우 겹표지 오른쪽 상단에 □ 표시를 하고 아래쪽에는 전체 사본 부수(12), 위쪽에는 사본의 번호를 기재
- 기간을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적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8월 31일, 계획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
- 주요 실적이 3페이지 이상인 경우, 최신일자 순으로 3페이지까지 본문에 작성하고, 전체 내용은 별첨으로 제출

IV. 선정신청서류 작성 세부지침

1. 공익채널 선정신청서
2. 서약서
3. 공익채널 선정 신청인 관련 사항
4. 공익채널 운영계획서
5. 부속 서류
6. 별도 제출자료

선정신청서 ①



2016년도 공익채널 신청서

(방송분야 : “예시” 사회복지)

원 본

2015. 9.

로고 (주)○○방송

원본임이 틀림없음

법 인 명 :

대표자명 : (인)

목 차

I. 공익채널 선정신청서	17
II. 서약서	22
III. 공익채널 선정 신청인 관련 사항	23
IV. 공익채널 운영계획서	26

I. 공익채널 선정신청서

■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6.24.>

공익채널 선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0일
------	------	------	-----

신청 방송분야	예) 사회복지(사회적 소수자 복지)	공익채널 선정 실적	년 도 방송분야
------------	---------------------	---------------	-------------

신청인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채널명		채널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편성책임자		생년월일	
	최다액출자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요주주 (5%이상)			
	주된 사무소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주전송장치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방송개요	방송유형		등록한 방송 분야	
	등록일자		운용개시일	
	송출매체		시청가구수	가구
	1일 방송 운 용시간		자본금	납입자본금 : 원 실질자본금 : 원

「방송법」 제70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2제2항에 의한 공익채널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 귀중

제출서류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1부. 2. 공익채널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1. 공익채널 선정신청서 작성요령

- 선정신청서는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1. 신청인

- 소재지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

2. 신청분야

- 공익성 방송분야 고시(2012-44호)에 해당되는 분야를 작성하고 괄호()로 전문편성 세부영역을 기재

3. 방송개요

- 등록된 방송분야, 등록일자 등 해당 사항을 기재

4. 자본금

-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 수치는 '15. 6. 30일 이후 기준으로 기업진단보고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원 단위로 기재

Ⅱ. 서약서

Ⅲ. 공익채널 선정 신청인 관련 사항

1

법인에 관한 사항

- 1) 법인의 명칭 :
- 2) 법인의 설립연도 :
- 3) 신청채널명 및 등록일자 :
- 4) 신청채널의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 :
 - 기업진단보고서('15.6.30일 이후)*의 내용과 동일
 - * 「방송법 시행규칙(미래부령 제21호)」 제4조 제3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 기업진단요령에 따라 작성된 기업진단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
- 5) 신청법인의 타 방송사업 운영현황 :
- 6) 신청법인의 타 목적사업 운영현황 :

2

구성주주에 관한 사항

구성주주의 법인명 또는 성명 ¹⁾	사업자등록 번호 또는 생년월일	유형 ²⁾	출자액		구성주주의 최대주주		주요 업종 ³⁾	특수관계 여부 ⁴⁾	비고 ⁵⁾
			금액	비율	법인명 또는 성명 (동일인 포함 지분율)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 1) 법인명 또는 성명란에는 개인의 경우에는 성명을,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을 기입
- 2) 유형란에는 주식회사·유한회사·합자회사·합명회사·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의 출자회사·정부출자기관·외국법인·비영리법인·개인 등으로 구분하여 기입하고, 주식회사인 경우 상장·등록여부를 표시
- 3) 주요업종란에는 구성주주가 법인이거나 개인사업을 경영할 경우에는 한국표준사업분류(KSIC)에 의한 산업세분류 업종을 기입하고, 2개 이상의 업종을 동시에 경영할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큰 업종을 기입
- 4) 특수관계여부란에는 구성주주간 방송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의 관계 표시
- 5) 비고란에는 구성주주의 외국인 주주 및 지분율을 기재

IV. 공익채널 운영계획서

1. 신청 방송분야에의 적합성

1

공익채널 선정의 필요성

- 당해 채널의 운영목표, 당해채널의 전문분야, 신청분야와 전문편성 세부영역과의 적합성, 당해채널을 공익채널로 선정해야 하는 당위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주요연혁 및 연도별 송출실적 현황

- 최초등록일, 본방송 시작일 등
- 연도별(최근3년) 플랫폼 송출 실적
 - 플랫폼(SO, 위성, IPTV)별로 구분하고 SO 송출은 아날로그, 디지털 채널 구분
 - ※ 연도별 플랫폼사업자와의 계약서 사본을 부속서류에 첨부할 것
- 기타 사항

- 개국 이후 전문분야, 채널명, 대표자, 최대출자자 등의 변경내용 내역

변경일	변경항목	변경내용
2012.1.2.	대표자	홍길동 → 김길동
...		

2

과거 채널 운영실적

1. 전문편성 방송프로그램 제작 실적

- 과거('13.1.1~'15.8.31) 당해 채널에서 방송하였던 방송프로그램(자체제작, 공동제작, 외주제작, 국내구매, 해외구매로 구분)의 기본방향 및 목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의 우수성 등 기술
- 당해 채널 프로그램의 수상실적 현황(2013.1.1 ~2015.8.31)

법인명	채널명	순번	수상년 월일	수상자 (소속)	프로그램명	수상제목	수여기관	수상내용	비고

- 당해 채널에서 방송한 주요 프로그램 설명(2013.1.1 ~2015.8.31)

- 프로그램명, 제작형태(자체제작, 공동제작, 외주제작, 국내구매, 해외구매로 구분), 주요 내용, 프로그램의 구성편수, 편당 방송시간, 편당 제작비 또는 구매액, 시청률 등

프로그램명	○○○	제작 형태	
편당 프로그램 길이	00분	제작 편수	16편(주당 1편)
장르		편당 제작비	만원
방송기간	년 월 일~년 월 일	시청률 (조사기관 자료)	00%
		시청점유율 (조사기관 자료)	00%
기획의도	10줄 이내로 간단히 작성		
주요구성	10줄 이내로 간단히 작성		

※ 주요 프로그램의 샘플 동영상을 수록한 DVD 1개 제출(표지에 프로그램 순서표시)

2. 전문편성 비율

○ 전문편성 세부영역을 고려하여 전문편성비율을 기재

구분	세부분야		2013년					2014년					2015년		
			1Q	2Q	3Q	4Q	합계	1Q	2Q	3Q	4Q	합계	1Q	2Q	합계
전문 편성		시간(분)	2,116 (2,184)												
		비율(%)	96.9												
	○○ ○	시간(분)													
		비율(%)													
	소계	시간(분)	2,116 (2,184)												
		비율(%)	96.9												
부편성	○○ ○	시간(분)	68 (2,184)												
		비율(%)	3.1												
	소계	시간(분)	68 (2,184)												
		비율(%)	3.1												
합계	시간(분)	2,184 (2,184)													
	비율(%)	100.0													

※ %는 반드시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기(소수점 둘째자리를 반올림)

3. 제작유형별 편성비율

○ 제작유형별(자체제작¹), 공동제작², 외주제작³, 국내구매⁴, 해외구매⁵)로 구분)로 편성비율 기재

구분	세부분야		2013년					2014년					2015년		
			1Q	2Q	3Q	4Q	합계	1Q	2Q	3Q	4Q	합계	1Q	2Q	합계
자체 제작	시간(분)	1,020 (2,184)													
	비율(%)	46.7													
공동 제작	시간(분)														
	비율(%)														
외주 제작	시간(분)	1,164 (2,184)													
	비율(%)	53.3													
국내 구매	시간(분)														
	비율(%)														

해외 구매	시간(분)													
	비율(%)													
합계	시간(분)	2,184 (2,184)												
	비율(%)	100.0												

※ %는 반드시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기(소수점 둘째자리를 반올림)

- 1) 자체제작 : 방송사 단독으로 기획, 제작, 편성하여 저작권 가지는 경우
- 2) 공동제작 : 방송사업자가 타인과 공동으로 기획, 투자, 제작하는 경우(공동기획, 공동투자, 공동제작의 3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
- 3) 외주제작 : 국내에서 당해 방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제작하는 경우(공동기획, 공동투자, 공동제작의 3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
- 4) 국내구매 : 국내에서 당해 방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당해 방송사업자가 아닌자를 위하여 제작한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경우
- 5) 해외구매 : 외국의 사업자가 제작한 모든 방송프로그램을 외국에서 직접 또는 국내 유통사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4. 본방프로그램 편성비율

- 전체 방송프로그램 편성 중 신청분야 및 전문편성 세부영역과 관련있는 전문편성 방송프로그램과 부편성 방송프로그램 중 본방편성 비율을 표시

구분	세부분야	2013년					2014년					2015년		
		1Q	2Q	3Q	4Q	합계	1Q	2Q	3Q	4Q	합계	1Q	2Q	합계
전문 편성	시간(분)	1,224 (2,184)												
	비율(%)	56.0												
부편성	시간(분)	38 (2,184)												
	비율(%)	1.7												
합계	시간(분)	1,262 (2,184)												
	비율(%)	57.8												

※ %는 반드시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기(소수점 둘째자리를 반올림)

※ 본방이라 함은 다른 채널에서의 방송여부와 상관없이 당해 채널에서 처음 방송한 프로그램으로 재방, 삼방에 대응되는 개념임

3

방송법령 위반 내역

○ 심의 관련 위반사항 현황(2012.9.1 ~ 2015.8.31)

프로그램명	제재조치명	처분일자 (위반일자)	위반법령	위반내용	비고
	주의, 경고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0조제0항		

※ 처분일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 통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위반일자는 해당 프로그램 방송일(초방)

○ 기타 행정처분 현황(2012.9.1 ~ 2015.8.31)

행정처분명	처분일자 (위반일자)	위반법령	위반내용	행정처분 내용	비고
과태료					

※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심의제재 이외 행정처분명(시정명령,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
처분·위반일자('yy.mm.dd), 위반법령(조, 항), 위반내용, 시정조치 내용 등을 작성

2. 공정성.공익성 및 실현가능성

1

공익적 활동 실적 및 계획

1. 공익적 활동 실적

○ 신청분야와 관련 있는 신청법인의 공익적 활동실적(2013.1.1 ~ 2015.8.31)

(단위 : 백만원)

순번	년월	지역	사업명	주최·주관단체	지원 및 활동내용	지원금	비고
합 계							

※ 지원금은 영수증 등 증빙이 가능한 실적만 기재

2. 공익적 활동계획

○ 신청분야와 관련 있는 신청법인의 공익적 활동계획(2016.1.1 ~ 2017.12.31)

(단위 : 백만원)

순번	년월	지역	사업명	주최·주관단체	지원 및 활동내용	지원금	비고
합 계							

3. 운영계획의 적정성

1**전문편성 방송프로그램 제작 계획****1. 전문편성 방송프로그램 제작계획**

- '16년부터 '17년까지의 신청분야 및 전문편성 세부영역과 관련 있는 전문편성 방송프로그램 제작계획의 우수성, 신청 전문편성 세부영역과의 연계성, 방송 프로그램 기획의도 및 주요 구성의 참신성, 독창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2. 전문편성 방송프로그램 제작계획의 실현가능성

- 당해채널에서 방송 제작 예정인 주요 프로그램(2016.1.1.~2017.12.31.)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아래 양식 표로 정리

< 주요 방송 프로그램 제작·편성계획 >

편성일자	프로그램명	방송시간(분)	기획의도 및 개요	비고

- 전체 방송프로그램 중 신청분야 및 전문편성세부영역과 관련이 있는 전문편성 방송프로그램과 부편성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을 기재

구분	세부분야		2016년					2017년				
			1Q	2Q	3Q	4Q	합계	1Q	2Q	3Q	4Q	합계
전문 편성	공연 예술	시간(분)										
		비율(%)										
	예술 교육	시간(분)										
		비율(%)										
	소계	시간(분)										
		비율(%)										
부편성	○○	시간(분)										
		비율(%)										
	소계	시간(분)										
		비율(%)										
합계	시간(분)											
	비율(%)											

※ %는 반드시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기(소수점 둘째자리를 반올림)

2

방송프로그램 수급 계획

- 향후 2년간('16~'17년) 방송프로그램 수급 관련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 제작유형(자체제작, 공동제작, 외주제작) 및 구매유형(국내구매, 해외구매)별 계획은 아래 표 양식으로 작성

구분		2016년					2017년				
		1Q	2Q	3Q	4Q	합계	1Q	2Q	3Q	4Q	합계
자체제작	시간(분)										
	비율(%)										
공동제작	시간(분)										
	비율(%)										
외주제작	시간(분)										
	비율(%)										
국내구매	시간(분)										
	비율(%)										
해외구매	시간(분)										
	비율(%)										
합계	시간(분)										
	비율(%)										

※ %는 반드시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기(소수점 둘째자리를 반올림)

- 당해채널에서 향후 2년간 (2016.1.1~2017.12.31) 편성 예정인 주요 프로그램에 대해 제작형태별로 구분하여 아래 표 작성
 - 프로그램명, 제작형태(자체, 외주, 공동, 국내구매, 해외구매), 주요내용, 프로그램의 구성편수, 편당 방송시간, 편당제작비 등)

연도	프로그램명	제작형태	구성편수	편당 방송시간	편당 제작비(만원)
		자체제작		60분	
		주요내용			
		외주제작			
		주요내용			
		공동제작			
		주요내용			
		해외구매			
		주요내용			

※ 제작형태는 1장(신청방송분야에의 적합성) p29 참조

3

본방 프로그램 편성 비율

- 신청 방송분야 및 전문편성 세부영역과 관련 있는 전문편성 방송프로그램과 부편성 방송프로그램의 본방편성 비율을 기재

구분		2016년					2017년				
		1Q	2Q	3Q	4Q	합계	1Q	2Q	3Q	4Q	합계
전문편성	시간(분)										
	비율(%)										
부편성	시간(분)										
	비율(%)										
합계	시간(분)										
	비율(%)										

- ※ %는 반드시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기(소수점 둘째자리를 반올림)
 ※ 본방이라 함은 다른 채널에서의 방송여부와 상관없이 당해 채널에서 처음 방송한 프로그램으로 재방, 삼방에 대응되는 개념임

4. 공적 책임의식 및 사업수행능력

1

재정적 능력

가. 지난 3년간 재무 현황

- o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신청법인의 재정운영 현황을 구체적으로 설명
 -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의 내용을('12~'14년) 표로 기재
- o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재무제표 기재

< 최근 3년간(2012~2014년) 재무제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요약 대차대조표	자산총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부채총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총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요약 손익계산서	매출액			
	방송사업매출액			
	기타사업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매비와관리비			
	인건비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재무비율	유동비율(%)			
	부채비율(%)			
	총자산이익률(%)			
	자기자본이익률(%)			

※ 최근 3년간 감사보고서 또는 결산보고서를 부속서류에 첨부

나. 경영 및 재정운영 계획

- 경영목표, 시장 여건 분석, 수익성 분석 등을 바탕으로 2016년, 2017년의 경영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 경영계획 등을 바탕으로 2016년, 2017년 신청법인의 재정운영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 재정운영 계획의 구체적 산정 근거 등은 부속서류에 첨부
(타사업·타채널사업 경영 사업자는 신청법인의 전체 재정운영 계획과 신청채널에 해당하는 별도 재정운영 계획을 각각 제출)
- ※ 재정운영 계획의 구체적 산정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 심사평가 시 불이익 받을 수 있음
- 2016년부터 2017년까지의 추정재무제표 작성

< 향후 2년간(2016~2017년) 추정재무제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요약 대차대조표	자산총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부채총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총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요약 손익계산서	매출액		
	방송사업매출액		
	기타사업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매비와관리비		
	인건비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재무비율	유동비율(%)		
	부채비율(%)		
	총자산이익률(%)		
	자기자본이익률(%)		

2

방송프로그램 제작인력 보유현황 및 확충계획

1. 방송프로그램 제작인력 보유현황

o 2013년부터 2015년 8월까지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한 인원을 기재

(단위 : 명)

구분	임원	방송직						관리 행정	연구직	광고 영업 홍보	OO	OO	OO	합계
		PD	작가	방송 기술	OOO	OOO	소계							
'13년														
'14년														
'15.8월														

o 2015년 8월 현재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한 인원을 고용형태, 담당업무 등을 기재

(단위 : 명)

구분	고용형태		담당업무	기타
	정규	비정규직		
임원				
PD				
작가				
방송 기술				
OOO				
OOO				
소계				

※ 계약직, 파견직은 비정규직으로 기재 함

2. 방송프로그램 제작인력 확충계획(2016년~2017년)

- 방송프로그램 제작인력 확충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아래 표를 작성

(단위 : 명)

구분	임원	방송직						관리 행정	연구직	광고 영업 홍보	OO	OO	OO	합계
		PD	작가	방송 기술	OOO	OOO	소계							
2016년														
2017년														

※ 계약직, 파견직 등 비정규직은 ()로 별도 표기함

(예시) 10명중 2명은 비정규직일 경우 : 10(2)

- 2016년부터 2017년까지의 방송프로그램 관련 직원 교육계획

(단위 : 명)

구분	2016년		2017년	
	교육대상	교육내용	교육대상	교육내용
국내전문교육				
국내 교양교육				
해외교육				

3

방송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과 확충계획

1. 방송시설 및 장비보유 현황

○ 방송시설 및 장비 현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아래 표 작성

○ 방송시설 현황(2015년 8월 기준)

(단위:백만원)

구분	연도	2015년 8월 기준
프로그램 제작관련 시설명		시설명
소 계		000백만원
송신관련 시설명		시설명
소 계		000백만원
기타 시설명		시설명
소 계		000백만원
총 액		000백만원

○ 방송장비 현황(2015년 8월 기준)

(단위:백만원)

구분	연도	2015년 8월 기준
장비명		장비명
총 액		000백만원

2. 방송시설 및 장비 확충 계획

○ 방송시설 및 장비 확충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아래 표를 작성

○ 방송시설 계획(2016년~2017년)

기간	방송시설명	세부내용	투자금액	비고

○ 방송장비 확충 계획(2016년~2017년)

(단위:백만원)

기간	방송장비명	세부내용	투자금액	비고

5. 시청자불만 및 민원처리 현황

1

시청자민원처리 방법의 제도화

- 시청자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 홈페이지 시청자의견란 구성 및 운영실적 등 시청자 불만 및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자체 규정 마련 및 시행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2

시청자 민원처리 실적

1.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가. 시청자위원회 운영 현황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8월	합계
시청자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				
시청자위원회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사항 건수				
제시의견 활용실적 건수				

나. 시청자위원회 제시의견 반영 및 미반영 내역

(단위 : 건, 기간 : 2013.1.1 ~ 2015.8.31)

순번	시청자위원회 제시의견 반영 · 미반영 내역	제안 날짜	비고

2. 시청자 민원(불만)처리 절차

o 시청자 민원 담당부서 현황, 시청자 민원처리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후 아래 내용 작성

가. 시청자 민원 접수 처리현황

(단위 : 건)

구분	불만접수건수	불만처리건수	미처리건수	불만처리비율(%)
2013년				
2014년				
2015년 8월				
합계				

나. 시청자 민원 처리결과 개선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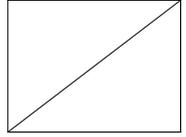
- 시청자 민원처리 제도를 통해 접수된 내용 중 민원 내용을 수용하여 개선한 실적(2013년부터 작성)

접수일자	접수내용	처리실적
년 월 일		
합계		

3. 시청자위원회 및 민원처리 계획

- 향후(2016년~2017년) 시청자 위원회 운영 및 민원처리 계획을 작성

선정신청서 ②



부속서류

원 본

2015. 9.

로고 (주)○○방송

원본임이 틀림없음

법 인 명 :

대표자명 : (인)

목 차

1. 신청인에 관한 부속서류	0
1.1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원본 1부	0
1.2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0
1.3 주주명부(신청일 기준) 사본 1부	0
1.4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이력서 각 1부	0
1.5 납세사실증명원 원본 1부	0
1.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0
2. 사업계획에 관한 부속서류	0
2.1 시설 현황 증빙 자료(계약서, 도면 등) 사본 1부	0
2.2 보유 장비 현황 증빙 자료(자산목록, 계약서 등) 사본 1부	0
2.3 최근 3년간 감사보고서(또는 결산서) 사본 1부	0
2.4 2015년 1월 ~ 2015년 8월 월간 편성표 사본 1부	0
2.5 2015년 7, 8월 주간 편성표 사본 1부	0
2.6 기업진단보고서(기준 : '15.6.30일 이후) 원본 1부	0
※ 「방송법 시행규칙(미래부령 제21호)」 제4조 제3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 기업진단요령에 따라 작성된 기업진단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할 것	
2.7 신청분야와 관련 있는 전문편성 방송프로그램 보유 목록(자체제작, 공동제작, 외주제작, 국내구매, 외국구매 구분)	0
2.8 신청분야와 관련 있는 전문편성 방송프로그램 확보예정 목록(자체제작, 공동제작, 외주제작, 국내구매, 외국구매 구분)	0
2.9 부편성 방송프로그램 보유 목록(자체제작, 공동제작, 외주제작, 국내구매, 외국구매 구분)	0
2.10 부편성 방송프로그램 확보 예정 목록(자체제작, 공동제작, 외주제작, 국내구매, 외국구매 구분)	0
2.11 기타 증빙 자료 1부	0
3. <u>조건부과가 있는 경우 이행결과 제출</u>	0

별도 제출 자료

o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법인명, 채널명, 방송분야, 대표자 약력 등을 아래 표로 작성하여 '15.10.8일까지 이메일로 제출(kong10@kcc.go.kr)

법인명		(예시)
채널명		
방송분야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방송분야
대표자(주요약력)		o ○○○○('97) o ○○○○('00) o ○○○○('14)
편성책임자(주요약력)		o ○○○○('00) o ○○○○('14)
소재지		
자본금 (원)	납입	000원
	실질	000원
송출 현황	SO(아날로그/디지털)	5(5/2)
	위성	1
	IPTV	3
최초등록일		0000.00.00
타 방송사업 운영		
주요주주(5%이상)		홍길동(21.4), 김길동(10.4)